



학생책임전담지도교수제 운영 규정

규정번호	2-5-1
제정일자	2001. 3. 1.
개정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0조(학생지도) 제①항에 의한 학생책임전담지도교수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 <2022.4.21. 개정>

제2조(대상) 학생책임전담지도교수제는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 <2022.4.21. 개정>

제3조(위촉) ① 지도교수의 위촉은 학과별, 학년별, 수강 반 편성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소속학과 전임교원으로 하며, 학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과 협의를 거쳐

본 대학 전임 교원에 한하여 배정 할 수 있다. <2019.11.14. 개정> <2022.4.21. 개정>

③ 교무처장은 매 학년 초 총장의 재가를 얻어 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4.21., 2023.3.30., 2024.3.20.>

제4조(임무) 지도교수는 학생과 면담 및 기타의 접촉을 수시로 갖고 그들의 학문적 향상과 인격 도약을 위해 지도하여야 한다.

제5조(특별지도) 지도교수는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여 학부모 면담 등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별도조치가 요구되는 자는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4.21., 2023.3.30., 2024.3.20.>

1. 결석계 제출없이 장기간 결석하는 자
2.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일정치 않은 자
3. 품행 및 성적이 불량한 자
4.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자

제6조(기록) 지도교수는 지도내용을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매학기 말 학생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삭제> <2019.11.14. 개정> <2023. 3. 30. 개정>

제7조(학생지도상담)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상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 <2019.9.1.개정> <2019.11.14. 개정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